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의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제64조의2(과징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게시 등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③ 법 제50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라.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50조의9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등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법 제50조의9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9제7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9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4조의2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5항제3호 중 “연구”를 “연구 및 정책 지원”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1호 중 “제50조의3제1항”을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를 “인터넷진흥원에”로 한다.

가.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나.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

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도목을 도목의2로 하고, 같은 목의 위반행위란 중 “필요한 조치”를 “ 각 호의 조치”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3”를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호에 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도. 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3	750	1,500	3,000
도의2.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4	750	1,500	3,000

별표 9 제2호수목5) 위반행위란 중 “제9호의2”를 “제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4”로 한다.

별표 3의2 정보 전송 역무 제공의 거부 등의 조치 기준(제62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지한 즉시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한다.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로 인해 해당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보안체계 취약점을 점검·개선한다.
-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이용약관)의 미비점으로 인해 해당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이용계약(이용약관)을 개선한다.
- 라. 자사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인해 해당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개별기준

유 형	조치 기준
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내에 규정한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광고성 정보 전송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명자료 및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나. 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내에 규정한 서비스 제한 및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광고성 정보 전송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자료 및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별표 3의3]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등(제64조의2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 가.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행위: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행위: 20억원

2.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0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제1호 각 목에 따른 부과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준금액과 가중·감경

가. 기준금액의 산정

- 1) 기준금액은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0%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0% 이상 3.0% 미만
보통 위반행위	1.0% 이상 2.0% 미만

- 나) 법 제50조제5항,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이상 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4.0% 이상 5.0% 미만
보통 위반행위	3.0% 이상 4.0% 미만

2) 제6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법 제50조제5항,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다음의 사항(법 제50조의9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및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 2)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 4)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 5) 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4. 세부 기준 등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

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2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의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u>
<u><신 설></u>	<u>제64조의2(과징금 산정기준 등)</u> <u>① 법 제5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u> <u>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u> <u>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u> <u>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u> <u>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u> <u>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u>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
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
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
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
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
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
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
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
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
송, 게시 등과 관련이 없는 재
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

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
정하는 매출액

③ 법 제50조의9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
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
우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
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
는 경우

라.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
액에서 제2항에 따른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
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
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신 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50조의9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3의 3과 같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법 제50조의9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9제7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신 설>

<신 설>

로 한다.

제6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9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4조의2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

	<u>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u> <u>⑤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u>연구</u>	3. ----- ----- <u>연구 및 정책 지원</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③ ----- -----

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
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
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
령 및 공표명령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
태료 부과 · 징수

<신 설>

<신 설>

-----.

1. ----- 제50조의3-----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가.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
항, 제50조의4제4항, 제50
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나.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
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
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정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

<u><신 설></u>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u> 위탁한다. 1. · 2. (생 략)	<u>은 자</u> <u>다.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u> ④ ----- ----- ----- <u>인터넷진흥원에</u> ----- -----. 1. · 2. (현행과 같음)
--	--